

강북구 예술인마을 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강북구는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관내에 소재한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주택인 ‘강북구 예술인마을 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모집개요

- ☐ 모집분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 공고문 3쪽 ‘신청자격’ 확인)
- ☐ 신청기간: 2025. 8. 4.(월)~8. 11.(월)
- ☐ 당첨발표: 2025. 10. 중 발표
- ☐ 계약기간: 2025. 11. 중
- ☐ 입주기간: 2025. 12.~2026. 1. 중
 - ※ 계약 및 입주기간은 서울도시주택개발공사(SH)에서 대상자 개별 연락 예정
 - ※ 공급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 모집주택: 총 3세대

구분	제2차 예술인마을	제3차 예술인마을
공급호수	총 18세대 중 잔여 2세대	총 10세대 중 잔여 1세대
위치	강북구 삼양로163길 18 (우이동 30-17번지)	강북구 삼양로123가길 41 (수유동 557-19번지)
모집호수	304호 / 404호	202호
입지여건	· 우이경전철 솔밭공원역 도보 6분 이내 · 지선·간선·일반버스 도보 5분 이내	· 우이경전철 4·19민주묘지역 도보 6분 이내 · 지선·간선·일반버스 도보 5분 이내
주차대수	9대	5대
엘리베이터 유무	있음	없음

※ 1세대 1주택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임대기간

- 최초 계약기간: 2년(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재계약,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조건: 재계약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이 가능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계약(향후 법령 개정 등 사정에 따라 요건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규모 및 임대보증금·월임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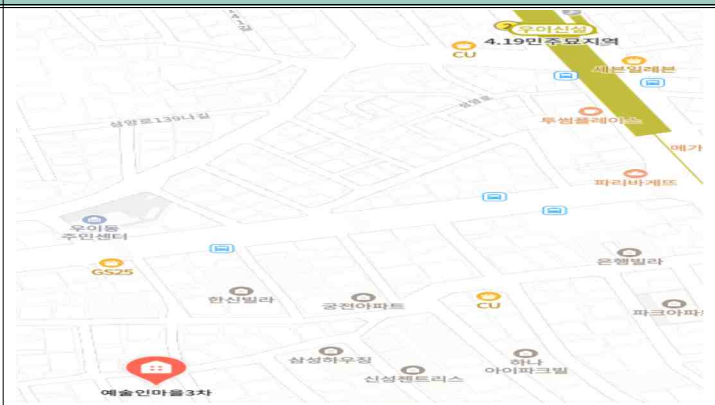
연번	구분	호수	전용 면적	방 개수	가구 원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 70% 이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1	제2차	304호	30.47m ²	1	1	15,400,000	200,700	25,680,000	334,600
2		404호	21.4m ²	1	1	11,080,000	144,400	18,480,000	240,800
3	제3차	202호	31.4m ²	1	1	18,250,000	237,800	30,430,000	396,400

※ 기준 가구원 수 이하 세대 입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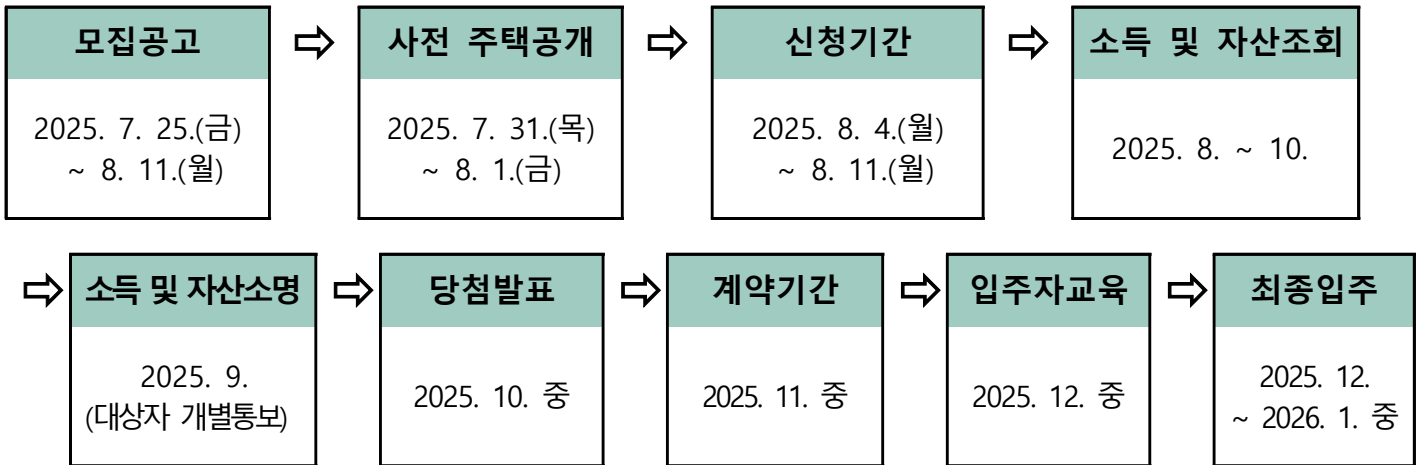
※ 공동 관리비 및 호수별 공과금은 별도 추가 부담

※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의 60%까지 상호전환 가능(문의: SH성북강북센터)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제2차 예술인마을	제3차 예술인마을
	
위치도	
	
전경사진	

2. 추진일정



□ 사전 주택공개

○ 공개일시

- 제2차 예술인마을: 2025. 7. 31.(목) 10:00 ~ 16: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제3차 예술인마을: 2025. 8. 1.(금) 10:00 ~ 16: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공개방법: 공개일시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북강북센터(☎02-944-8000)에 연락하여 해당 주택 비밀번호 등 확인 후 방문 (※ 점심시간(12:00~13:00)에는 통화 불가)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 모든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7. 30.)을 기준으로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성년인 사람(2006. 7. 30. 이전 출생)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5. 7. 30.) 현재 서울시에 거주 중인 사람 (단, 외국인 신청 불가)
-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또는 ‘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신청자격상 용어 설명

구분	신청자격상 용어 설명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 단, 출판 분야는 제외함’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2025. 7. 30.)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 신청자</td><td></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td rowspan="2">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r> <td>•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r> <tr> <td>•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td>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tr> </tbody> </table> ※ 주택소유 여부, 소득 및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를 대상으로 함 ※ 직계존·비속에 신청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구성원이 아니며, 따라서 자격검증 대상이 아님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r> <tr> <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 </tbody> </table>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신청 가능)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구분	내용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구분	내용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월평균소득 50% 이하 기준액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액
	1인 가구	2,518,715원 3,238,348원
	2인 가구	3,286,202원 4,381,602원
	3인 가구	3,813,487원 5,338,881원
	4인 가구	4,289,044원 6,004,662원
	5인 가구	4,515,524원 6,321,734원
	※ 위의 월평균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은 20% 가산, 2인은 10% 가산한 금액임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한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강북구에서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자산기준 (소득 50% 이하만 해당)	자산가액	총 자산가액: 2.37억원 이하 ※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함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2025. 8. 4.(월) ~ 8. 11.(월) 18:00

□ 신청서류: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입주신청서: 붙임 서식 작성

② 문화예술분야 증빙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 서류

※ 증명서 상 유효기간은 계약 시까지 유효해야 하며, 모집 신청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증명서 신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소명기간(7월 중, 대상자 개별 안내)까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자격 인정

③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등 전부 기재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붙임 서식 작성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붙임 서식 작성

□ 신청방법: 전자우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작성 및 증빙자료 ‘개별’ 스캔 후 이메일(lawliet12@gangbuk.go.kr)로 송부

○ 접수 시 제목은 ‘예술인주택_신청인명’ 으로 메일 발송

※ 신청 후 2~3일 이내 접수 확인 문자 발송예정 (발신번호: 02-901-6208)

※ 접수 확인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 작성양식: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고시공고 → 강북구 예술인 마을 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함께 입주신청서 등 서식 게시

□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 이용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전자우편 발송 오류에 따른 전송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지정기간 내 미도착 시 무효로 간주)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5. 소득 및 자산 조회 · 소명

☐ 소득 및 자산 조회: 2025. 8. ~ 10.

☐ 소득 및 자산 소명 대상자 서류 제출: 2025. 9. 중 개별통보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 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6. 심사

☐ 심사기간: 2025. 8. ~ 10.

☐ 심사방법: 서류심사(객관적 평가) 100%

☐ 서류심사 배점

평가항목		배점	합계
① 월평균소득		50% 이하	40
		50% 초과 70% 미만	35
② 거주기간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60
		4년 이상 5년 미만	55
		3년 이상 4년 미만	45
	강북구 외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40
		3년 미만	35

※ 거주기간은 최종 전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말소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강북구/서울시로 재등록 · 재전입한 날부터 가산)

☐ 선정방법

○ 서류 평가항목의 배점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입주 신청자가 공급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순위에 따라 결정

①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이 긴 순

② 월평균소득액이 낮은 순

③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 긴 순

※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7. 당첨발표

□ 당첨발표: 2025. 10. 중 예정

□ 발표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당첨자 개별 통보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에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예비입주자 명단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수선정(금회 모집호수가 2세대인 ‘제2차 예술인마을’ 신청 시 해당됨)

○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희망호수 반영

○ 동점자 발생 시

① 강북구 연속 거주기간이 긴 순

② 월평균소득액이 낮은 순

③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이 긴 순

※ 거주기간은 최종 전입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 유의사항

○ 호수 결정 후 호수 변경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교환은 불가능함

○ 당첨자의 주소, 이메일, 연락처 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 후 퇴거세대 발생 등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재공고를 통해 추가모집을 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당첨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지

○ 예비입주자 순위: 입주자 선정방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기존 관내 예술인마을 예비입주자가 금회 모집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입주자 자격 주택을 1개소만 선택해야 함

8. 입주자교육

☐ 일시 및 장소: 2025. 12. 중 통지

☐ 내 용: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입주자들이 공동체주택의 취지 및 주택관리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고 입주자 자치 규약 등을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입주자 참여 의무사항임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9.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계약기간: 2025. 11. 중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추후 통지 예정)

☐ 구비서류

본인 내방시	신분증, 계약자 도장(서명 가능)
제3자 대리인 내방시	상기 '본인 내방시 구비서류', 계약자 도장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 제3자 계약시(예비배우자 포함):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계약자 신분증,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후 잔금 납부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북강북센터와 최소 2주 전 입주일 협의 후 입주 가능합니다.

- 계약 후 입주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으실 경우 입주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입주 종료일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금의 목적물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16조)

☐ 입주기간: 2025. 12.~2026. 1. 중 (공급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계약문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62, 8564)
(입주 및 시설문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북강북센터(☎02-944-8000~1)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

- 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입주 전까지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목적물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 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 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와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착오에 의한 당첨, 시스템 오류 등)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

10.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강북구청 문화관광과(☎02-901-6208)

☐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62, 8564)

☐ 주택공개 및 입주(임대료 상호전환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성북강북센터(☎02-944-8000~1)

11. 유의사항

-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 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강북구 예술인마을은 공동체주택이며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관리 비용 등) 등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최장 20년)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 등 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신청 시 기재한 입주자격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및 해당 협회의 증명이 가능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계약 시 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보유 기준과 관련하여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선정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입주자 선정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됩니다. • 신청 기간 내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기간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가 소명되지 않을 시 배점 차감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2배수를 예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고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로

	발생한 공가세대에 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는 입주대상자 발표 시 함께 발표하고 예비입주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입주대상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되며, 입주대상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가 변경될 경우 즉시 구청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안내문 미수령 등 선정사실 미확인 및 미계약으로 인한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호 선정계약체결	• 호수 배정은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선택권을 부여하며, 입주 후 호수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 또한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선정,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계약)자가 된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자격 확인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호실 교환 및 공실로의 호실 이전은 불가합니다. • 공고문 상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나 별도의 유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및 소음도, 주택 진입로 등 내·외부 환경(생활여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나 호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발생 원인 제공 행위, 반려동물 관련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피해 발생,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타 입주자에게 성희롱 또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재계약 거절 또는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변경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이 있을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2조, 제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제34조)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의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시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동법 제49조의3),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49조의8),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57조의3)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예정) 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문의: SH성북강북센터)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분양권 등,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3. 분양권 등
 - ※ 분양권 등 신규 계약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 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
 - ※ 준공 후 등기 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권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2023. 11. 10., 2024. 3. 25.>」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추진으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추진으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서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추진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추진으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안내

(임대보증금 ↔ 임대료)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월임대료의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가능 (전환이율 연6.7%) [예시 :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180만원 추가납부]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가능 (전환이율 연2.5%) [예시 : 보증금 1,000,000원 당 월임대료 약2,000원 매월 추가납부]	
전환 처리 기준일 및 전환 방법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	신규 입주자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여 금액 확정 후 잔금 및 전환보증금을 계약금 계좌로 납부. 납부 확인 후 관할 센터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 수정 (※실입주일부터 변경된 월임대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기존 입주자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입금분에 한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미리 입금해도 다음달 1일 부터 적용)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신규 입주자	계약후 입주전까지 관할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전환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잔금고지서 변경 (※실입주일부터 변경된 월임대료가 일할 계산됩니다)
		기존 입주자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환신청서 작성분에 한해 다음달 1일 부터 적용.(※신청월 말일에 정산 보증금 반환)
※유의사항 :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연1회 신청가능(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예시] 임대보증금 1500만원+월임대료 200,000원월 경우

구분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본 임대조건	15,000,000원	200,000원	15,000,000원	200,000원
최대전환시 변동금액	+21,490,000원	-120,000원	-9,000,000원	+18,700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36,490,000원	80,000원	6,000,000원	218,700원

관할 센터로 문의하세요.

남부주거안심지원센터	전화번호	서부주거안심지원센터	전화번호	동북주거안심지원센터	전화번호
관내주거안심종합센터	828-5100-1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2657-8100-1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	944-8000-1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828-5100-1	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	6340-9000-1	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944-8000-1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2086-9800-1	관천주거안심종합센터	6340-9000-1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	6909-9300-1
서초주거안심종합센터	2086-9800-1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2620-6700-1	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	6909-9300-1
강동주거안심종합센터	6946-3800-1	영등포주거안심종합센터	2620-6700-1	노원주거안심종합센터	3399-0000-1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3400-4700-1	마포주거안심종합센터	380-0100-1	도봉주거안심종합센터	3399-0000-1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2087-6601-2	동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6496-5400
		은평주거안심종합센터	6910-9400-1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490-1700-1
		서대문주거안심종합센터	6910-9400-1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490-1700-1
		종로주거안심종합센터	6910-9400-1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3.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 ·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 ·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 동산 ·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 · 주식 ·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총자산항목 설명(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 분	총자산항목 설명	비고
부동산가액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에 따른 공시가격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금융자산가액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6.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7.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자산가액	항공기 및 선박, 임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부 채 산출기준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마.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한다.)	

개인정보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 38조 제 1항 및 제 3항 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서울시SH공사, 동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동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항목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우선공급 자격정보, 입주자 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 · 입주 정보
 - 소득항목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농업 · 어업 · 임대 ·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자활근로소득 · 공공일자리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 · 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제청소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자산항목 : 토지 · 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격, 자동차 등록원부 ·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 기타항목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한부모가정증명,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차상위(자활, 장애인), 차상위(한부모), 자기소개서 내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12개월, [입주예정자]5년, [계약자]영구
2. 본인은 강북구청,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이 건 업무처리결과 및 본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 제 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소득 · 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 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법 제 19조의 3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관리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대주택의 소재지(호 포함), 임대차 계약기간
- 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입주예정자]12개월, [계약자]임대차 계약 기간
3. 본인은 위 1.~2. 항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본인의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 항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2항 및 제 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주)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추가 서명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서명(또는 인)	법정대리인 인적사항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 인)
	-				-	
	-				-	
	-				-	
	-				-	

2025. . .

강북구청장 귀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²⁾ (서명 또는 인)														
		휴대전화번호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예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주택 신청자 일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홍길동	1 2 3 4 5 6 - 7 8 9 0 0 0 0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본인	홍길동	1 2 3 4 5 6 - 7 8 9 0 0 0 0 010-1111-1111	홍길동	홍길동
조	아름개	1 2 3 4 5 6 - 7 8 9 0 1 1 1 010-2222-2222	아름개	아름개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신청에 필요한 금융재신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통보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신청 지원

2024년 4월 15일

금융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제합용종)]

※ 작성방법

- ① 모든 빈칸은 자필로 기재하되, 필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또박또박 작성
- ②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 부분
 -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일 경우, 세대주 본인만 작성
 - 주민등록등본 상 2인 이상 세대일 경우, 모든 세대원을 작성
 -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분리 세대일 경우라도 함께 작성
- ③ 첨부된 서식에서 변경 불가

[붙임 7]

「강북구 예술인마을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 일반현황

신청인	이 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기 본					
		비상시					
강북구 전입일 (주민등록초본 기준)	년	월	일	서울시 전입일 (주민등록초본 기준)	년	월	일

기본 자격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서류 ☐ 유 / ☐ 무 (신청내역 ☐ 유 ☐ 무)		
소득 현황	가구원 수		월평균금액(세전금액) 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2. 입주주택 선택(희망호수 1개소만 체크)

주택	제2차 예술인마을	제3차 예술인마을
희망호수	☐ 304호 ☐ 404호	☐ 202호

※ 제출서류 : ① 입주신청서 / ② 문화예술분야활동 증빙서류(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입주자격 동의

신청인은 주택 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및 소득, 자산 기준 등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 동의서

○ 주택의 표시

주택명	강북구 예술인마을 공공주택(공동체주택)
주택 소재지	☐ 제2차 예술인마을 ☐ 제3차 예술인마을

본인은 상기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로

자치구로부터 공동체주택 입주자 의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체규약을 제정하고, 공동체공간을 운영하며,

공동체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입 주 자 : _____ (인)